

農產物 流通助成機能의 效率化方案

金 元 銖

(서울大 經營大 教授)

- I. 序 言
- II. 流通助成機能의 意義와 範圍
- III. 流通助成機能의 效率化方案

I. 序 言

本稿는 農產物(品)流通내지 마아케팅(agricultural marketing)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諸流通機能 중 특히 流通助成 또는 補助機能으로 구분되는 流通機能의 效率性を 提高하기 위한 方案을 摸索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農產物流通 뿐만 아니라 마아케팅과 관련되어 수행되는 流通機能의 分類에 대해서는 異論이 많으므로 本稿의 主題를 다루기에 앞서 流通機能의 意義와 內容 및 그 範圍가 어떠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本題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은 문제를 먼저 序說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다음 그와 같은 검토과정에서 파악한 流通助成機能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現況 내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解決과 관련하여 流通助成機能이 어떻게 수행되어야만 할 것인가 그 效率化方案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II. 流通助成機能의 意義와 範圍

農產物流通의 窮極的인 目標는 適正한 流通機

能의 수행을 통해 農產物의 需給이 원활하게 調整됨으로써 이를 통한 소비자생활수준의 유지내지 向上이 이루어지게끔 하자는데 있다.

이와 같은 農產物流通의 窮極的인 目標내지 社會的 役割이 이룩될 수 있으려면 農產物의 流通과 관련되어 수행되는 流通機能내지 流通活動이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됨으로써 農產物流通能率이 향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農產物流通能率은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農產物流通能率} &= \frac{\text{農產物流通產出}}{\text{農產物流通投入}} \\
 &= \frac{\text{農產物流通目標}}{\text{農產物流通手段}} \\
 &= \frac{\text{農產物流通을 통한 消費者 滿足}}{\text{農產物코스트}} \\
 &= \frac{\text{農產物消費生活水準}}{\text{農產物코스트}} \\
 &= \frac{\text{所得} \times \text{品質水準}}{\text{農產物價格水準}} \\
 &= \frac{\text{所得} \times \text{品質水準}}{\text{農產物코스트}}
 \end{aligned}$$

다시 말한다면 農產物流通能率은 農產物流通을 통해 달성하려는 目標 즉 產出과 이의 달성을 위해 이루어져야만 하는 流通手段의 投入의 相對的 關係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目標가 일정하다면 手段의 投入의 最少化가 流通能率을 向上시켜주므로 흔히 流通能

率は 流通手段投入의 貨幣的 表現인 流通코스트의 增減으로 이를 測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流通手段의 投入의 最少化는 流通產出인 目標가 일정한 경우에만 意義가 있는 것이므로 流通코스트의 引下가 流通目標인 消費滿足을 低下시키는 경우에는 流通能率을 오히려 低下시키므로 流通코스트의 一方의인 引下만으로 流通能率의 向上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 流通助成機能의 效率化는 바로 上述한 바와 같은 의미에서 이의 能率化로 이해하고 以下를 推論키로 한다.

流通手段의 投入이란 바로 流通機能의 수행을 뜻하는데 그렇다면 流通機能에 포함되는 流通助成機能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마케팅文獻上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流通機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¹⁾.

- 1) 交換機能(functions of exchange)
 - 가) 購買(蒐集)
 - 나) 販賣(分散)
- 2) 實體供給機能(functions of physical supply)
 - 다) 運送
 - 라) 保管
- 3) 助成機能(facilitating functions)
 - 마) 金融
 - 바) 危險負擔
 - 사) 市場情報
 - 아) 標準化 및 等級(別)化

여기서 보면 助成機能으로는 金融, 危險負擔, 市場情報 및 標準化와 等級(別)化의 네가지 機能을 들고 있으나 流通을 助成하는 機能으로는 이 밖에도 여러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1)流通構造評價教授團의 보고에 의하면 流通情報, 流通金融, 流通稅務, 流通法規, 公正去來促成, 消費者保護 및 價格表示制 등을 들어 검토

하고 있고²⁾, 또 어떤 文獻에서는 流通金融, 流通情報, 流通行政, 流通保險, 標準化(規格)등을 들고 있고³⁾, 경우에 따라서는 實體的 供給과 관련되는 保管에 해당하는 備蓄을 드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보듯이 流通機關이 수행하는 流通機能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게끔 助成내지 補助하여 주는 기능으로서의 流通助成機能 또는 流通補助機能의 내용에 대해서는 多樣性이 있고, 또한 그 범위에 대해서도 異見이 있으므로, 이에서는 이의 범위를 暫定的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특히 農產物流通과 관련시켜 검토하기로 한다.

- 1) 標準化, 等級化(包裝포함)
- 2) 流通金融
- 3) 流通危險負擔
- 4) 流通情報
- 5) 備蓄
- 6) 流通行政
- 7) 流通法規
- 8) 流通稅務

Ⅲ. 流通助成機能의 效率化方案

1. 標準化 및 等級化(包裝포함)

標準化란 需給의 品質의 分離를 조정하기 위해 수행되는 기능으로서 여기에는 標準化할 農산품을 類別·等級化할 기준이 되는 標準 또는 規格을 設定하고 유통될 農산품이 이러한 標準에 합치하게 되는가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標準化란 標準내지 規格에 農산품이 합치하는가를 品種別 集群으로 類(選)別하고, 다시 그것을 品質의 良否 정도에 따라 설정한 等級을 붙여서 等別 또는 等級化해야 한다. 그러므로 農산품이

等價集團으로 분류되어 代替性을 가지게 되면 표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標準化機能이 수행되면 (1)通名去來내지 標準品去來를 할 수 있어서 實見去來에 소요되는 코스트가 절감될 수 있고 (2)混合運送내지 保管을 할 수 있어서 運賃 및 保管費用이 싸지며 (3)資金融通이 유리해지며 (4)先物去來나아가서는 危險負擔과 관련하여 連繫去來(hedging)가 가능하게 되며 (5)市場情報의 入手도 보다 용이해진다는 利點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米穀流通과 관련하여 볼 때 等級은 特, 上, 中, 下로 구분되고 있으나 등급에 일정한 客觀的인 品質基準이 명확히 設定되어 있지 않아서 商人의 目測에 의해 判別되고 있고 農協共販場에 있어서도 비슷한 慣行이 이루어져서 同質品の 값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이 때문에 一般小賣商의 等級操作이 恣行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委託商段階에서의 下品이 小賣商단계에서는 上品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같은 質의 쌀이라도 產地에 따라 가격차가 크므로 소비자에게는 湖南米가 京畿米로 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소비자의 產地 및 等級에 따른 예민한 選好態度는 이러한 現象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⁵. 특히 一般米와 統一米에 대한 소비자의 品質評價는 현저히 다른데 최근의 維新米를 제외한 統一系新品種은 모두 低質米로 간주되고 있어서 高所得層에서는 負의 需要彈力性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매상은 고객의 비위를 맞추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陰性的去來를 하게 되며, 一般米와 維新米의 질적차이가 적으므로 유신미를 一般米에 混入하여 良質米로 판매하고 있고, 政府米搗精過程에서도 維新米와 低質의 統一系品種이 混入하므로 政府米의 品質 역시 低下되고 있는 것

이다⁶.

또한 靑果物의 경우에는 等級化와 規格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령 等級化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制度의 未備로 인해 等級의 優劣에 다른 價格差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이의 實效性이 없다. 특히 靑果物은 같은 品目이라 하더라도 그 形狀, 크기, 무게, 水分含量, 영양가 및 熟成度가 다르므로 標準化하기가 어려운 것이다⁷.

또한 生牛의 경우 이의 評價基準이 제대로 設定되어 있지 않아서 去來의 公正性이 沮害되고 있으며⁸ 肉類의 경우에는 等級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⁹.

이에서 보듯이 農產物一般에 대해 標準化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에 따르는 去來의 迅速·公正·明確化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면에서 農產物全般과 관련된 農產品規格이 설정 活用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農產品規格은 그 성격상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이익을 반영하는 消費者規格으로 設定되어야만 할 것이나 暫定規格으로서 去來의 迅速·圓滑·公正化를 기하기 위한 商業規格을 設定·施行하여야만 할 것이다. 물론 現行의 農產物檢査法에 따른 檢査規格이 있기는 하나 이는 生産者規格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초기적인 것이므로 이의 改正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곡의 경우 商業規格의 성격을 띠는 規格이 설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品目別로 產地에서 포장할 때부터 選別·等級化되어야만 하며 搗精工場에서는 品種別로 選別·搗精한 다음 等級化하여 포장하도록 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中央都賣市場 및 農協共販場에서 再檢査·再包裝함으로써 等級을 확정하여야만 한다. 이를 통해

不正去來의 根源이 사전에 防止될 수 있다. 이에 따라 米穀의 品質差別化와 價格差別化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去來면에서도 對抗力을 가질 수 있게 되고 去來가 公正化될 수 있는 것이다¹⁰. 또한 靑果物의 경우에는 產地와 品種을 기준으로 한 規格의 設定이 필요하며 畜產物의 경우에는 標準化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데 예를 들면 生牛의 경우에는 體重稱量과 肥育 정도에 따른 評價基準을 설정하고 肉類의 경우에도 生畜의 상태, 枝肉 및 精肉의 品質區分에 따라 等級化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농산품의 標準化가 이루어지려면 公信力이 있는 等級化機關이 설치되고 專門等級士를 양성함으로써 농산품에 대한 信賴度を 높이고 等級化에 필요한 資料 및 統計 등을 擴充·整備하고 等級區分에 따른 標識내지 證票 및 印章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非包裝品去來의 경우에는 包裝規格이 필요하지 않으나 包裝品去來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包裝單位량을 전제로 한 包裝標準化내지 規格化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現行 米穀의 包裝規格은 80kg 한 가마가 일반적이나 서울市內에 搬入되는 쌀은 產地에 따라 重量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80kg~93kg까지 多様な 包裝規格으로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同一品質의 쌀이라도 가마당 價格差異가 생기게 되고 去來上重量單位는 이를 換算하는 번거로움이 생김과 아울러 價格操作의 一因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小賣用의 包裝單位로는 적합하지 않아 再包裝을 할 필요가 있어서 操作費가 二重으로 들게 되어 流通合理化가 阻害되고 있다¹¹. 이는 바로 蒐集商이 농민을 농간할 수 있는 素地가 되고 있으며 小賣商이 소비자를 현혹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產地包裝單位를 統一化하고——農協 調査에 의하면 소비자는 10kg의 包裝單位品을 選好하므로——包裝單位를 10kg, 50kg 및 80kg 등의 適正包裝單位로 分化하여야만 한다¹². 그런데 韓國工業規格上의 包裝標準化와 관련하여 볼 때 이는 包裝의 規格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包裝과 관계가 있는 用語 및 材料의 試驗方法 등만을 다루고 있을 따름이어서¹³ 실질적으로 流通合理化에 필요한 包裝標準化를 規定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流通合理化에 필요한 包裝標準化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2. 流通金融

流通金融이란 농산품이 최종소비자나 산업용 소비자에게 유통되어 가도록 하는데 필요한 貨幣 및 信用을 조달하여 運用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流通金融機能이 수행됨으로써 金融上의 時間的 分離가 조정되어 생산자에게는 生産完了와 동시에 再生產資金으로서의 商品代金を 지급하게 되고 반면 소비자는 상품구매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여도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農產品流通機關이 流通所要資金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는 自己資本과 銀行信用 및 商業信用의 세가지가 있는데, 商業信用 즉 外上販賣 및 割賦販賣에 따르는 信用供與은 흔히 銀行信用으로 代替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農產物流通과 관련하여 볼 때 대다수의 仲買人은 自己資本不足으로 高利의 短期性私債에 의존하고 있어서 類似都賣市場과 같은 성격으로 變貌되어가고 있고, 農協共販場도 財務構造가 脆弱한 指定去來人에만 依存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運營成果도 不振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들 農產物流通業體는 정부의 投資支

援對象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流通金融上的의 혜택도 거의 없으며 따라서 中央都賣市場에 대한 施設 및 運營資金의 支援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類似都賣市場의 委託商(客主)은 생산자에게 평균 2천만원 정도의 前渡金 및 貸與를 하고 있어 이것이 價格引上的의 溫床이 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高利債에다 外上販賣를 하게 되니 이의 償還을 위해서는 부득이 價格을 引上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¹⁴.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農產物流通機關은 일반적으로 零細·小規模의이므로 自己資本力은 물론 金融調達力도 낮아 이로 인한 流通機能의 합리적인 수행이 불가능하여 流通能率의 一因인 流通코스트내지 流通마아진 引上的의 바탕이 되고 있다.

사실상 農產物流通機關을 포함한 유통기관(宿泊業包含)의 自己資本比率을 보면 76년에는 20.2%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63년의 67.4%에 對比할 때 약 3割臺로 낮아지고 있다¹⁵. 더구나 都小賣業의 外上去來比率은 1963년이래로 擴大推移를 나타내고 있고¹⁶, 流通機關에 대한 銀行信用供與比率도 漸減推移를 나타내어 77년에는 7.3%에 지나지 않는다¹⁷.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반적으로 零細規模가 많은 農產品流通機關의 自己資本力의 脆弱性 및 資金調達力의 弱화는 당연히 窺知할 수 있으므로 이들 流通機關의 自己資本力의 強化내지 補完을 위해 協業化하거나 나아가서는 法人化되도록 誘導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아울러 이들에게 資金支援을 하기 위한 制度金融을 통한 選別的 支援金融을 하여 줄 필요가 있다.

3. 流通危險負擔

농산품이 생산자로부터 消費者에게로 流通되

어가는 과정에는 여러가지의 損失을 생기게 하는 危險이 伏在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기관은 이와 같은 危險에 따르는 財務的責任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위험으로는 예를 들면 物理的 減損, 變質, 腐敗, 盜難, 貸倒, 需給의 변화 및 가격의 변화 등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

이러한 危險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1)付保可能한 위험의 경우에는 損害保險에 가입하여 위험을 轉嫁하는데 이에는 信用保險 및 經營中斷保險 등도 있다. (2)상품에 따라서는 商品去來所에서의 連繫賣買(hedging)의 방법을 통하여 價格變化에 따르는 위험을 轉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商品去來所의 開設과 機能強化도 필요하다. (3)腐敗性商品의 경우에는 예컨대 低溫保管(cold storage), 冷蔵車 및 低溫流通시스템(cold chain system)의 도입에 의해 이에 따르는 위험을 除去내지 排除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支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市場情報의 質的量的增大가 필요하다.

4. 流通情報

生産者が 農產品을 商品化할 때는 물론 流通機關이 賣買活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려면 流通情報가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流通과 관련된 事實을 나타내는 流通情報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하여 주는 것이므로 이의 不足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農產物流通이 이루어질 수 없게끔 하는 一因이 된다. 더구나 去來地域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하게 되면 質的量的으로 이러한 流通情報가 증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情報가 있음으로써 유통기관은 가격하락내지 수요변동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對策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전체적으로

流通關聯情報가 광범히 擴散·傳達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農産물의 時勢는 다른 상품과 달리 아주 단기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므로 신속·정확한 市場情報의 疎通 傳達は 생산자나 中間商 및 소비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유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流通情報는 여러 情報源에서 얻을 수 있다.

農民生産者の 경우 農產物流通에 관한 정보를 入手하고 있는 情報源을 보면 商人의 비중이 가장 높아서 23.5%이며 다음은 이웃으로서 22.5%이고 5日制市場이 21.3%, 農協이 17.5%, 매스컴이 15.2%로서 가장 낮다. 이에서 보면 商人의 比重이 가장 높는데 情報源別 有利性을 보면 農協情報는 보다 광범하고 분석적이며 隨時로 정보를 入手할 수 있어 選好되고 있으며, 商人情報는 現地市場의 價格에 대해 상세하다는 점에서 選好되고 있다.

이에 대해 中間商의 市場情報入手는 신문이나 라디오 등과 같은 매스컴보다는 오히려 委託商이나 이웃, 小商人 및 自己判斷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⁸.

畜産物の 경우에는 產地家畜市場에 있어서 去來情報의 法的公示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商術에 능한 상인이 市場情報와 時勢에 어두운 農民生産者에 대해 去來의 主導權을 行使하고 있고, 이로 인해 公正한 價格形成이 어려워 產地市場에서는 少數의 巨商이 去來價格과 더불어 去來의 成立 그 자체를 좌우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¹⁹.

이로서 미루어 農產物流通機關이 市場情報의 質的·量的不足으로 합리적인 流通機能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農產物流通情報를 체계적으로 수립, 처리, 분석, 配

布하는 機關이 없고 또한 이를 맡고 있는 기관이 제대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농협중앙회에서 1975년부터 農產物流通情報센터를 개설하여 中央會 및 系統組合에 56臺의 電信打字機를 확보 운용하고 있고, 서울, 釜山, 大邱에 3臺의 自動電話應答裝置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고 이밖에 一般라디오放送을 통한 農產物時勢放送이 이루어지고 있을 따름이다²⁰.

이와 같은 면에서 地域別價格差形成의 主因이 되고 있는 農產物流通情報의 效率化가 이루어짐으로써 全國市場圈이 완전 競爭市場化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는 既存農協의 農產物流通情報센터의 機構와 機能을 擴大 強化하여 이를 廣域의으로 정보를 수립, 처리, 분석, 전달할 수 있는 廣域農產物流通情報시스템의 資料베이스化하고, 이를 통해 農產物流通情報蒐集의 범위를 擴大하고 分析內容의 體系化 및 精密化를 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農產物流通統計를 擴充·整備하고, 流通關聯情報 및 資料의 蓄積을 통해 流通情報의 摸索을 가능하게 하여 農產物流通情報의 質的改善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農產物流通情報시스템의 컴퓨터化도 필요하며 신속한 情報傳達機器의 導入을 통한 情報傳達의 迅速化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매스컴을 통한 農產物流通情報의 傳達は 그 傳達範圍가 넓고 接觸이 용이하므로 이러한 매스컴 流通情報의 質的改善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이의 傳達範圍를 넓히기 위해서는 서울 中心의 一元的 放送體制를 단계적으로 개편하여 8 大都市 中心의 多元的 時勢放送體制로의 改編이 필요하며 放送時間帶의 調整도 필요하다.

또한 些少한 일이기는 하나 產地流通市場에

이어서의 去來情報의 揭示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當日에 賣買去來될 家畜의 需給狀況을 記載하고 主要家畜市場의 時勢와 前日 또는 前場에 매대된 家畜總數와 그 去來價格을 揭示하여 농민이 賣買決定時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助成하여야만 한다. 이와 아울러 農產物流通情報 利用者의 情報利用方法의 改善도 필요하다.

5. 備蓄(保管)

保管이란 기본적으로 流通助成機能이 아니라 實體的 供給機能에 속하는 기능으로서 이는 生産時點으로부터 最終販賣時까지 維持·保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保管은 個別的인 流通機關의 立場에서 수행되는 것이나 備蓄은 보다 巨視的이고 社會全體의인 觀點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社會全體의으로 볼 때 時間的인 需給의 不均衡은 결과적으로 流通過程上에서 價格을 引上시켜 궁극적으로는 物價上昇을 통한 消費者利益을 沮害시키기 쉽다. 특히 農產物의 경우 그 生産의 特性上 季節生産이 이루어지나 消費는 年中平準化되어 있으므로 이의 需給의 時間的 調整을 零細的이고 小規模的인 個別流通機關의 保管機能에 一任하면 이것이 합리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워 農產物流通이 合理的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게 된다. 사실상 産地의 委託商, 消費地의 委託商 및 小賣商의 保管施設이란 거의 없으며 店舖도 소규모적이어서, 예컨대 坡東市場委託商의 경우 平均店舖規模는 34坪이고 小賣商은 5.6坪이다²¹. 따라서 이들에 의한 保管機能과 價格調節機能의 합리적인 遂行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 결과 倉庫를 가진 地方搗精業者는 그들의 保管能力을 통하여 農民에게 先渡金을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양곡을 搗精 또는

年中 貯藏하여 市場價格形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서 보듯이 搗精業者를 제외한 生産農家나 中間商의 貯藏能力의 缺如가 農產物價格의 主變動要因이 되고 있으므로 生活必需品의인 農產品에 대해서는 정확한 需給計劃과 이에 따른 貯藏·備蓄計劃에 따라 農產品의 備蓄이 이루어짐으로써 需給의 安定化를 통한 價格의 安定化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 機能의 實效化를 위해서는 農產物價格安定基金의 擴充과 貯藏施設의 確保增設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능을 專擔하는 機關으로는 農協이나 農產物備蓄公社(假稱)를 설립 운영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流通센터의 利用도 하나의 方案일 수 있다.

6. 流通行政

農產物流通과 관련된 行政은 대부분이 農水産部에 의해 管掌되고 있으나 流通의 多元性 때문에 餘他 關聯行政官署 사이에 葛藤이 생겨 流通의 非效率化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農產品流通은 이의 價格形成과 관련하여서는 經濟企劃院, 이의 物的流通과 관련하여서는 交通部, 이의 加工食品에 대해서는 保社部, 販賣市場과 관련하여서는 商工部 및 地方官署의 介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農產物流通行政이 體系化되기 어렵고 이에 대한 行政力도 미비한 상태에 있다. 예를 들면 서울特別市の 경우 단 한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다 여러 業務를 겸하고 있어 사실상 0.5인이 管掌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特別市長이 개설한 6個都賣市場(靑果 2)도 모두 民間에 의해 所有·運營되고 있고, 全國 41個都賣市場 중 10개소만이 開設者인 地方自治團體에 의해 소유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로²² 미루어 볼 때 農產物流通目標의 달성을 위해 개설된 流

通機構가 民間에 拂下되고 있음은 流通行政의 不在를 나타내는 한 證據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면에서 農產物流通行政의 強化와 體系化가 필요한데 이는 어디까지나 全體流通行政의 하나의 下位行政이므로 全體流通行政의 테두리 안에서 一元化되어 다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農產物流通行政官署의 機構的 業務의 一元化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는 餘他的 流通行政과 隔絶된 單獨의 입장에서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7. 流通法規

流通行政은 流通法規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農產物流通關係法 體系의 未備는 農產物流通行政機關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이의 流通을 規制 또는 助成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마련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農產物流通과 관련된 法規로는 現行的 市場法, 農水產物 및 價格安定法, 畜產法, 農水產物檢査法, 農業倉庫法, 農業協同組合法 및 農產物價格維持法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는데²³ 이들은 모두 斷片的이고 體系化되어 있지 못해 農產物流通行政을 實效性있게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體系적인 農產物流通行政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斷片的인 諸農產物流通關聯法規들을 流通近代化促進法の 한 下法으로서의 農產物流通近代促進法으로 統廢合하여 單一의 體系化된 法規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農產物流通의 全段階를 망라하는 것으로서 產地蒐集商, 農水產物都賣市場, 家畜市場, 農水產物小賣市場의 전단계가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農水產物流通構造와 活動 및 機能의 近代化를 促進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²⁴.

8. 流通稅務

農水產物流通과 관련되어 徵收되는 租稅 및 公課金 등은 社會코스트의 負擔分이므로 이는 당연히 租稅의 衡平原則에 따라 徵收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產業育成 등의 이유로 하여 減免稅 등의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流通稅務行政면에서도 이와 같은 減免稅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農協共販場에 대해서는 免稅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中央都賣市場은 개인에 의해 시설이 소유 운영되고 있으며 稅制上 搬出商과 小賣商(구매자)들의 課稅資料를 陽性化하고 있어 7%의 수수료 이외에 附加價値稅를 생산자(出荷者)로부터 징수해야만 하는 徵稅義務를 지고 있다. 그러나 類似都賣市場의 個人委託商은 稅務行政上 課標에 의한 稅務履行을 하므로 事業者報告나 기타 보고서제출이 義務化되어 있지 않고 領收證發給없이 去來를 할 수 있으므로 陰性的去來가 가능하여 脫稅가 恣行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동일한 流通機能을 수행하는 流通機關사이에 租稅衡平의 원칙이 貫徹되지 못해 中央都賣市場은 競爭上 不利하게 되고 있다²⁵.

따라서 類似都賣商의 陽性化를 통한 租稅衡平의 原則의 貫徹이 필요하며 租稅 및 公課金과 手數料의 下向調整이 필요하다.

參考文獻

- 註 1. a) cf. Heidingsfield, M.S. & Blankenship, A.B. *Marketing: An Introduction to Principles and Practices*, 3rd. ed., 1974, pp.8~9
- b) 이러한 機能分類의 事例에 대해서는 吳相洛, 마아케팅原論, 1963., pp.81~82, 註 3 (a) 참조
- c) 이러한 機能分類의 妥當性에 대해서는 論難이 많으나 (金元銖, 마아케팅管理論, 1973., p.38 참조) 本稿에서는 論外로 한다.
2. 國務總理企劃調整室, 流通構造改善을 위한 調查研究報告書(流通構造評價教授團), 1974.7., pp.475~553
3. 邊衡尹, 金潤煥, 韓國經濟論, 1977, p.315
4. 國務總理企劃調整室 評價教授團, 流通構造改善에 관한 調查研究—農水產物을 중심으로—, 1978. 8. p.16
5. 上掲書, p.23
6. 上掲書, p.33
7. 上掲書, p.50

8. 上掲書, p. 76
9. 上掲書, p. 77
10. 上掲書, p. 34 참조
11. 上掲書, p. 16
12. 上掲書, p. 32
13. 上掲書, p. 451
14. 上掲書, pp. 49~50
15. 한국은행, 경제 통계 연보, 1976~78.
16. 國務總理企劃調整室, 流通構造改善을 위한 調查研究報告書, 前掲書, p. 514
17. 한국은행, 통계월보, 1978. 7. p. 52
18. 國務總理企劃調整室, 流通構造改善에 관한 調查研究農水産物을 중심으로 一, 前掲書, p. 17
19. 上掲書, p. 72 및 p. 76
20. 上掲書, p. 35
21. 上掲書, p. 16
22. 上掲書, pp. 50~51
23. 上掲書, p. 55
24. 上掲書
25. 上掲書, p. 50